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1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심의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5호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없 ”	“ 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
의결 년월일	2007. 1.23

제안년월일: 2007년 1월 9 일

제안자: 부천시장

□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심의를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5호 신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를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20조제2항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하며, 제22조중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제23조제3항중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을 “「부천시 정보화촉진 표준화 규정」”으로 하며, 제25조중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하고, 제26조중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을 “「부천시 정보화촉진 표준화 규정」”으로 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보안업무규정”을 각각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정보통신과
입안자	담당과장 권 희 춘
	담당팀장 이 승 표
	담당자 여길태(320-287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u></p> <p>제8조(협회의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u></p> <p>제8조(협회의의 기능)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1조(위원의 해촉) ----- <u>각호의 어느 하나</u> ----- -----</p> <p>1.·2. (현행과 같음)</p>